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

제정	:	2015.	7.	29.
		2017.		
		2018.		
개정	:	2020.	7.	1.
개정	:	2020.	12.	3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창업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센터는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(예비)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- 2. 학생 및 교직원의 창업 교육 지원
- 3. 교내 창업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
- 4.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
- 5. 학생창업 지원
- 6. 기타 센터 내 서무에 관한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의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
7-1-15 창업보육센터 규정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・의결한다.

- 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- 2. 센터의 주요사업의 계획 및 결과
- 3. 삭제
- 4.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- 5. 본교 학생, 교직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항

제 4 장 재 정

제8조(재원) 센터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1. 지자체, 산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지원금
- 2. 당해연도 교육센터에 편성된 교비
- 3. 창업지원에 따른 수익금
- 4. 기타 수입금

제9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0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센터는 매년 2월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.

제 5 장 학생창업 지원

제12조(학생창업 장려) 총장은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,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3조(학생창업 지원) ①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창업휴학을 할 수 있으며, 이

- 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
- ② 총장은 학생창업자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,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,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와 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우수 학생창업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 6 장 보 칙

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